

##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 경과연수

-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12월 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경과연수

- 2026년 제작 : 경과연수 1년 미만 적용
- 2025년 제작 : 경과연수 1년 적용
- 2024년 제작 : 경과연수 2년 적용

### ✓ 차량 잔가율표 : 조사·산정 기준 제27조 [별표 15]

-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승용		승합	화물
	국산	외산		
내용연수 경과연수	20년	20년	20년	20년
1년미만	0.826	0.842	0.810	0.761
1년	0.725	0.729	0.726	0.671
2년	0.614	0.605	0.609	0.597
3년	0.518	0.500	0.510	0.510
4년	0.437	0.412	0.426	0.426
5년	0.368	0.340	0.357	0.357
6년	0.311	0.281	0.298	0.298
7년	0.262	0.232	0.250	0.259
8년	0.221	0.172	0.215	0.229
9년	0.186	0.142	0.184	0.200
10년	0.157	0.117	0.157	0.172
11년	0.132	0.097	0.134	0.149
12년	0.112	0.080	0.113	0.128
13년	0.094	0.066	0.096	0.110
14년	0.079	0.054	0.081	0.098
15년	0.067	0.050	0.067	0.086
16년	0.063	0.048	0.058	0.065
17년	0.060	0.046	0.056	0.063
18년	0.057	0.044	0.054	0.062
19년	0.053	0.042	0.052	0.060
20년	0.050	0.040	0.050	0.058

## 제5장

## - 그 외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용도	영업용	영업용	영업용	
내용연수	4년	7년	7년	6년
1년 미만	0.779	0.820	0.702	0.717
1년	0.618	0.644	0.561	0.562
2년	0.348	0.514	0.500	0.455
3년	0.196	0.367	0.377	0.316
4년	0.100	0.288	0.280	0.215
5년	0.100	0.215	0.242	0.147
6년	0.100	0.170	0.172	0.100
7년	0.100	0.100	0.100	0.100

## -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후
11년	0.9	0.80	0.64	0.51	0.41	0.33	0.26	0.21	0.17	0.13	0.11	0.05

### 3. 시가표준액 산정 적용 요령

####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가격표 적용 방법

- ✓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

1-1. 형식분류				(단위 : 천원)	
가. 국 산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1	승용	CT&T	이존(e-ZONE)	CTNT-E70LG-0L	17,810
2	승용	CT&T	이존(e-ZONE)	CTNT-E70PB-0L	13,800
3	승용	글로밴	글로밴카니발리무진	YP9ABB-S-O	41,860
4	승용	글로밴	글로밴카니발리무진	YP9ABC	45,540
5	승용	기아	K3	BD47AB-P-8	18,800
6	승용	기아	K3	BD47AC-P-8	17,100
7	승용	기아	K3	BD47GB-H-8	22,490
8	승용	기아	K3	BD47GB-H-8S	24,000
9	승용	기아	K3	BD47GB-P-8	21,040
10	승용	기아	K3	BD47GC-H-8	21,700

- ✓ 시가표준액은 산출 시 천원이하 금액은 절사
- ✓ 동일한 형식별 기준가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명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 ✓ 형식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격을 적용함

1-2. 기종분류				(단위 : 천원)	
가. 국 산					
연번	제작사	기종명	기준가격		
1	CT&T	이존(E-ZONE)EDP,CTNT-E70PB-0L	12,640		
2	CT&T	이존(E-ZONE)EDP,납축	13,730		
3	CT&T	이존(E-ZONE)EDP,리튬폴리머	22,400		
4	기아	2022년형기아K3가솔린1.6노블레스A/T	19,720		
5	기아	2022년형기아K3가솔린1.6시그니처A/T	21,370		
6	기아	2022년형기아K3가솔린1.6트렌디A/T	15,320		
7	기아	2022년형기아K3가솔린1.6프레스티지A/T	17,260		
8	기아	2022년형기아K3가솔린터보1.6GT5도어시그니처A/T	22,760		
9	기아	2022년형기아K5LPG2.0(렌터카/장애인용)렌터카스탠다드A/T	18,510		
10	기아	2022년형기아K5LPG2.0(렌터카/장애인용)렌터카트렌디A/T	21,020		

- ☑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함
- ☑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 ■ 경과연수 적용

- ☑ 경과연수 적용은 제작연도(사실상의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델연도)를 기준으로 함
- ☑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경과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함
-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조·판매자”라 함)가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은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등록 기록이 있는 중고차, 말소등록 부활로 신규등록을 하는 차량은 제작연도를 고려하여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함

## ■ 시가표준액 감가 적용

- ☑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발급), 풍수해로 인한 피해사실증명서(지자체 발급)를 통해 침수사실이 증명된 차량은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30%를 특별 감가(천원 이하 절사)함

## ■ 용도가 변경된 차량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7조 제2항)

- ☑ 용도가 변경된 차량의 경우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
- ☑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함
  - 예) A가 출고 3년이 지난 영업용 국산 승용차량을 취득하여 2년 간 비영업용으로 사용 후 B에게 양도할 경우 B에 대하여 적용되는 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begin{aligned} \text{B의 잔가율} &= 0.196(\text{영업용, 경과연수 } = 3\text{년}) \times (1 - 0.156)(\text{경과연수 } 4\text{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 &\quad \times (1 - 0.158)(\text{경과연수 } 5\text{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 0.139 \end{aligned}$$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7조 [별표 16] 차량 용도별감가상각률표〉**

-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비영업용		영업용
	국산	외산	
1년 미만	-0.174	-0.158	-0.221
1년	-0.122	-0.134	-0.207
2년	-0.153	-0.170	-0.437
3년	-0.156	-0.174	-0.437
4년	-0.156	-0.176	-0.490
5년	-0.158	-0.175	0
6년	-0.155	-0.174	0
7년	-0.158	-0.174	0
8년	-0.156	-0.259	0
9년	-0.158	-0.174	0
10년	-0.156	-0.176	0
11년	-0.159	-0.171	0
12년	-0.152	-0.175	0
13년	-0.161	-0.175	0
14년	-0.160	-0.182	0
15년	-0.152	-0.074	0
16년	-0.060	-0.040	0
17년	-0.048	-0.042	0
18년	-0.050	-0.043	0
19년	-0.070	-0.045	0
20년	-0.057	-0.048	0

※ 경과연수 1년인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 잔가율 계산 예시 :  $(1-0.174) \times (1-0.122)$

## 제5장

## - 승합 및 화물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승합		화물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1년 미만	-0.190	-0.180	-0.239	-0.298
1년	-0.104	-0.215	-0.118	-0.201
2년	-0.161	-0.202	-0.110	-0.109
3년	-0.163	-0.286	-0.146	-0.246
4년	-0.165	-0.215	-0.165	-0.257
5년	-0.162	-0.253	-0.162	-0.136
6년	-0.165	-0.209	-0.165	-0.289
7년	-0.161	-0.412	-0.131	-0.418
8년	-0.140	0	-0.116	0
9년	-0.144	0	-0.127	0
10년	-0.147	0	-0.140	0
11년	-0.146	0	-0.134	0
12년	-0.157	0	-0.141	0
13년	-0.150	0	-0.141	0
14년	-0.156	0	-0.109	0
15년	-0.173	0	-0.122	0
16년	-0.134	0	-0.244	0
17년	-0.034	0	-0.031	0
18년	-0.036	0	-0.016	0
19년	-0.037	0	-0.032	0
20년	-0.038	0	-0.033	0

### ■ 구조변경 시 시가표준액 산정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7조 제3항)

- ✓ 차량의 원동기 또는 차체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원동기·차체변경 기준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함
- ✓ 다만,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름
- ✓ 원동기 상태에 따른 구분
  - 상 : 신조에 준하는 것 또는 개수한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없는 원동기
  - 중 : 상과 하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 후 원동기가 가동하는 상태지만 약간의 정비를 요하는 것이나 변경전 원동기가 재생은 가능하나 대수리를 요하는 것
  - 하 : 파손이나 노후로 가동이 불가능한 폐품과 유사한 것

### ■ 제작연도가 없는 차량의 잔가율 적용

- ✓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함
- ✓ 제작연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함
- ✓ 수입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함
  - 주한 외국대사관용 외국산 차량의 신규등록연도 : 외교부에 등록한 연도
  - 주한 미군 소유 차량의 신규등록연도 : 관할차량 등록기관에 등록한 연도